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 적용 세부기준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6]

소방업무 관련분야

- 1) 면허(자격)증은 정지, 취소, 기간만료 등으로 유효하지 않으면 불인정
- 2) 국내면허(자격)취득만 인정. 외국면허(자격)취득은 불인정

구 분	인정/불인정 여부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에 의한 효력정지, 자격정지 불인정
운전면허	운전면허시험(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에는 합격했으나 실물 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면 취득확인 불가로 불인정(유효성 여부 확인 불가)
항해사, 기관사, 소형선박 조종사	한정면허, 비한정면허(제한없음) 모두 인정. 기간 만료시 불인정
간호사,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연수를 받지 않아 효력이 정지된 면허(자격)은 불인정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갱신되지 않아 효력이 정지된 면허(자격)은 불인정

외국어 능력검정시험

- 1) 일본어 시험은 기준점수 이상의 총점을 획득함과 동시에 영역별 최저기준(과락여부)점수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만 가점 인정
- 2) 일본어·중국어 시험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한 기준등급보다 높은 난이도의 등급은 합격점 이상을 받으면 가점 인정. 그러나 더 높은 등급일지라도 불합격 점수일 경우는 불인정
- 3)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엄격한 감독절차 하에서 시행되는 정규(정기)시험의 성적만을 인정하며,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의 성적은 불인정
- 4) 외국에서 시행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은 문제 난이도 수준을 고려하여 TOEIC은 일본, G-TELP는 미국 성적만을 인정. 기타 기출문제를 재사용하는 외국시험은 불인정

일본어 JLPT	N1 합격점인 100점 이상 취득하면(N2 90점 이상) 충족한 것으로 인정 N1(100점 이상) = N2(90점 이상) = 3% 가점 인정
중국어 HSK	6급 합격점인 180점 이상 취득하면(5급 210점 이상) 충족한 것으로 인정 6급(180점 이상) = 5급(210점 이상) = 3% 가점 인정